

影島 租借問題을 둘러싼 露日의 競爭

金 大 商

港都釜山 第7號

1.

1968年の「ネルチニスク」(尼布楚, Nerchinsk)條約에 의해 清國 北邊에 접근한 露帝國은 이후 1世西를 지나는 동안 계속적으로 極東方面에 대한 進出을 試圖하여 1856年에 와서 愛珲條約을 체결했다. 이 條約으로 沿海州 일대를 차지한 露國은 「우라디보」港과 「포셋트」港을 개설하여 極東 進出에 대한 不拔의 據點을 마련하고, 1861年에는 日本海軍의 戰略的 要衝인 對馬島를 占領하려 하다가 日本과 英國의 共同抗議로 철퇴하기까지 되었다.

露國이 朝鮮政府에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바로 이해 즉 哲宗 11年에 日本이 보내온 書契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朝鮮과 露國간에 직접의 交涉이 생긴 것은 高宗 6年(1864) 2月 露人이 慶興府에 來到하여 修好 通商을 要求해 온 때부터이니, 당시 露人 來到의 報告를 받은 朝鮮政府는 極東方面에 대한 露國의 進出 意圖를 알지 못한 결과 아무런 적극적 對策도 세우지 못하고 自國 地方官憲의 團束을 嚴重히 하여 內應을 막는다는 苦肉之策을 對策의 基本으로 삼을 뿐이었다.

이후 露國은 邊境을 통해 對朝鮮 通商交涉을 끈덕지게 계속해 왔으나 번번히 拒絕당하다가 1884年에 이르러서야 「뫼렌돌프」 등의 暗躍에 힘입어 朝鮮과 通商條約을 체결하게 된바, 이것은 1876年的 韓日修好條約을 비롯하여 1882年에 체결된 韓美, 韓獨, 韓英간의 각 修好條約 및 1884年的 韓伊修好條約 보다 뒤늦은 것으로 朝鮮에 대한 露國의 公式的 進出이 늦은 것을 의미하지마는 露國은 이 條約을 계기로 對朝鮮 進出을 적극화하여 끌내는 對朝鮮 進出에 있어서 歐美諸國보다 앞섰던 日本과 심각한 勢力競爭을 벌리게 되었다.

本稿는 朝鮮에 있어서의 露日 勢力競爭의 한側面으로 나타난 釜山港의 影島 및 伏兵川 租借地 爭奪競爭相을 日本外交文書에 主로 의거하여 살펴본 것이다.

露國은 그의 極東 要港인 「우리디보」港^o 冬季에 凍結하므로서 海運上 또는 軍事上의 價值가 낮은 것을 補完하기 위해 朝鮮의 元山港에 着眼하게 되었는데, 露國이 釜山港에 租借地를 獲得하는 口實로 내세운 것은 「우리디보」港을 起點으로 하는 長崎·上海 等地와의 航路 運行上 필연한 寄港地를 開設하기 위해 汽船會社¹⁾를 設置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1889年(高宗 26) 서울 駐在 露國公使 章貝(Weher)는 기왕의 韓露條約에 의해서 露國租界가 이미 釜山港內에 設置되었다고 주장하고, 汽船會社 設置豫定地를 物色해 줄 것을 朝鮮政府에 要求해 왔다. 이에 대하여 總稅務司는 1889年 4月 釜山海關長 何文德에게 어느 곳을 정하면 좋을 것인지 租界地圖를 첨부해서 報告할 것을 指示했는데, 何文德은 <現地에는 清國과 英國租界 외에 露國租界가 設定된 바 없다>는 사실을 總稅務司에게 報告함으로써 政府는 章貝露國公使의 要求를 거절했다.

이 사정을 同年 2月 20日(陰)字로 何文德이 東萊監理 李容植에게 보낸 公文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敬啓者 昨奉總稅憲來電文，現有俄國商船欲往來上海 長崎釜山元山等埠擬在釜山港建設輪船公司 該港租界中何處可以建設 着將租界地圖囊送呈覽等語 弟查本港除中東兩國租界外 未知貴國從前與別國立約時 曾否定有租界 本關 既無他圖可考亦無 定界之案可。」

稽 爲此 專函奉詢 如貴署有繪成租界地圖 即 折惠贈一紙 以使送呈總稅憲察閱可也」²⁾

註 1) 「세베리요푸」汽船會社 支店을 의미하는 것인데 同社는 露國政府의 補助金에 의하여 1881年 「우리디보」港에 設立된 것으로 清國 日本 方面으로 運航하였다. 처음에는 「바이 칼」號(713톤)만을 就航시켰다가 1889年에 「노오위크」號(148톤)를 購入하고, 以後 「우라자밀」號(715톤) 「스도래 록크」號(190톤) 등을 就役시켰는데 航海中 元山, 釜山에 寄港하게 되었다. 이 會社 支店이 釜山에 설치되면 日本 세력에 중대한 威脅이 된다고 하여 이를 반대하는 日本 朝野의 與論이沸騰하였다.

2) 海關往復信件存案

露國이 極東汽船會社 즉 「세베리요푸」會社를 設置하려 한 表面上의 理由는 前記한 바와 같이 同社의 航運上의 便宜에서라는 것인데, 어쨌든 이 문제에 해결을 얻지 못한 章貝公使는 1890年에 이르러 다시 釜山港內의 伏兵山 및 四併山一帶를 다시 買收하려 하다가 利害關係가 相反된 입장에 선 日本側의 妨害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후 露國은 1896年부터 다시 絶影島 内에 租借地를 買入하려는 치열한 工作을 벌려 日本과 對立하게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詳論하나 露日兩國이 釜山港에서 치열한 對立을 보이게 된 것은 同港이 차지하는 通商, 軍事上의 價值 때문이었다.

3.

日本은 1888년 이래 倭館時代부터 居留民들의 墓地로서 使用해 오던 伏兵山一帶의 墓地地域을 그들의 居留地 附屬地로서 正式으로 租借하기 위해 交渉을 진행해 오다가 1892年8月에 와서 東萊監理와 日本總領事 간에 正式 租借協定의 成立을 보았다.³⁾

이로써 日本은 이 地域에 대한 3萬5千坪을 正式으로 占有하게 되고 該地域內에 陸海軍墓地까지 設定하여 日本領事が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日本이 該地域에 대한 租借權을 獲得하기에 앞선 同年5月 서울 駐在 露國公使 章貝는 朝鮮政府에 작용하여 伏兵山 및 四屏山에 대한 土地購買의 承認을 얻어 該地域에 대한 測量을 실시함으로써 日本側과 대립하게 되었으나 결국 日本側이 이를 차지하게 되었다. 章貝公使가 買入根據로 들고 나온 것은 1884年5月17일에 成立한 韓露條約인 바 全文 4條로 된 이 條約에 의해서 露國은 仁川·元山·釜山·京城·楊花鎮의 開放을 보장받고, 특히 釜山에 있어서는 不便하다고 認定할 경우 附近의 1個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開放된 각 港口에서는 露國 官民이 土地 家屋을 貨貸 또는 購買하여 家屋·倉庫·製造所等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3) 釜山府史原稿 14卷 P 435~438 參照

다. 露國側이 伏兵山 墓地 前面에 해당하는 海岸 400미터와 그 東쪽을 測量하여 標木을 세우게 되자 日本領事는 즉시 該 墓地 일대에 대해서 露國側과 該判할 것을 서울 駐在 日本公使에게 要求하였다. 이리하여 露日간의 대립이 계속되던 중 日本居留民(川本達)이 露國에 앞서 이 地域을 買入해 버림으로써 露國의 意圖는 좌절되고 前記와 같이 同年 8月 日本이 正式 租借權을 얻게 된 것이다.

이후 日本은 1894年 同 墓地 境內에 石油會社 支店을 설치하고 陸海軍 및 警察墓地의 保存은 釜山本願寺別院에 委託하였다.¹⁾

4

露國은 伏兵山 一帶에 대한 土地 買收工作에 실패한 以後에도 계속 釜山港內 租借地 獲得을企圖하게 되어 1896年에는 絶影島 東北端에 대한 租借問題가 일어나 露日 간에 前例 없이 심각한 競爭相을 보이게 되었다.

1896年 朝鮮政府는 對內的인 黨派의 갈등과 國際 力競爭의 틈바구니에서 弱體化하여 同年 2月 國王이 露國公使館으로 撰遷하게 되자 이 결과 日本勢力を 背景으로 조직되었던 金弘集 内閣은 倒懶되고 親露內閣이 出現한 바, 이후 高宗이 還宮할 때까지의 1년 동안 政府의 諸 政令은 모두 이 露國公館內에서 發해졌으며, 각부의 日本人 顧問과 軍事敎官이 罷免되고 露人이 任命되어 財政監督과 軍隊 訓練을 露人们이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露國은 各種 利權을 特占하는 한편으로 美·佛등 諸 外國에게도 利權을 均霑시켰다. 事態가 이와같이 발전함에 따라 同年(1896) 5月 章貞公使와 小村壽太郎 日本公使 간에 朝鮮問題에 대한 타협적 議定書가 協定되었는데 이 協定에 의해서 朝鮮에 대한 露帝國의 力이 國際的 公認을 받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서울 政界의 動態를 背景으로 하여 同年 8月 章貞 露國公使는 다시 絶影島 租借問題를 朝鮮政府에 申込하였고, 外務大臣(閔種默)은

4) 前掲書 P435~440 參照

同島 内에 설치된 日本 貯炭場의 先例에 따라 露國側에도 租借를 승인할 수 밖에 없다고 日本公使에게 通告하였다. 朝鮮政府의 이러한 회답에 접한 加藤日本公使는 8月 15日, 이 事實을 本國 外務大臣에게 報告한 바 大限外務大臣은 이 사실을 매우 중대시 하여 陸海軍大臣에게 通告하는 동시에 駐서을 加藤公使 및 現地 釜山의 尹伊集院 領事에게는 驗應한 모든 對策을 講求하라고 訓令했다. 日本이 絶影島 租借問題를 중요시하게 된 것은, 租借가 承認되는 경우, 露國의 勢力 根據地가 釜山港에 마련되어 이미 優位를 占하고 있는 自國勢力에 중대한 위협이 가해지고 특히 日本 海軍의 同島內 貯炭所가 압박되기 때문이었다. 日本은 釜山 租界의 설정을 본 이후 세력확장을 위해 1885年 12月 27일에 이미 朝鮮側과 「租地 絶影島地基約單」⁵⁾의 成立을 봄으로써 同島 黑石岩 일대(現 青鶴洞) 70間 平方 4,900坪을 年租 20圓으로 租借하여 海軍專用의 貯炭場으로 使用하고 있었던 것이다.

露國이 租借하려는 곳은 바로 이 日本 貯炭場 西쪽 일대였기 때문에 日本으로서는 이 問題를 중대시 하여 各種 妨害工作을 전개했다.

租借問題에 대해서 日本公使가 朝鮮政府 外務大臣의 通告를 받기에 앞서 韋貝는 本國政府에게 朝鮮皇帝로부터 絶影島 租借에 대한 免許를 받았다는 報告를 하게되어 同年(1896) 7月 露人이 長崎로부터 비밀히 來釜하여 租借豫定地를 調査해 갔다. 그 뒤 日本側이 露國의 動向을 알게 된 후인 8月29일에는 仁川에서 다시 來航해온 露艦「시우치」號 편으로 駐서을 露國公使館의 書記官인 「계루펠크」가 來釜하여 東萊監理와 함께 日本貯炭場에 인접한 3百間 四方의 地域을 선정하였다. 이 사실을 안 伊集院日本領事는 즉일로 1명의 書記生을 東萊監理에 파견하여, <露國選定地는 장차 釜山港

5) 前掲 釜山府史原稿 P592 參照

6) 約單全文

因此 日本政府爲海軍建造倉庫貯藏煤炭 租借 朝鮮慶尙道絕影島中 所稱黑石岩之地基 共計四千五百坪 一坪每方二米突 所有地 基租額定以每年 銀貨貳拾圓 定納 朝鮮政府卽 自換約之日起算 於日本公使館 每陽曆十二月十五日 先將明年租額 交付統理衙門查收爰立約單 並附地圖 以昭憑信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 필연적이며, 또한 貯炭場으로서는 지나치게 넓은 地域이므로 朝鮮에不利한 결과가 올 것이니 이에 대한 반대 意見을 서울에 통보해 달라>고 要求해 왔다. 그리고 그 전말을 本國에 報告했다.

한편 「케루벨크」書記官이 선정한 地域은 朝鮮政府 總稅務司「부라운」이 이미 各國租界地를 설정하기 위해 測量劃定한 바 있는 地域을 犯하고 있었기 때문에 釜山海關長「한도」(美人)는 同月 30日 露國의 絶影島租借는 極東平和를 교란 시키게 된다는 要旨의 報告를 總稅務司「풀단」에게 報告하였다. 東萊監理 李容植도 30일과 31일의 兩日에 걸쳐 「케루벨크」露國書記官의 現地 舉動에 관한 상세한 報告를 外務大臣에게 보냈다.

東萊監理의 이 報告를 통해서 당시 「케루벨크」와의 現地 接觸狀況을 잘 알 수 있는 바 同 報告의 내용은 大要 다음과 같다.

30日 書記官 「케루벨크」가 監理署에 와서 絶影島 煤炭庫地 租借에 관한 外衙發給의 公文을 보이고, 本日 現地에 나아가 測量을 하니 監理도同行하라고 하므로 同行했다. 그러나 「케루벨크」가 丈量하여 地界를 划定한 地面은 外部가 發給한 公文과 다르며, 그 面積도 廣大하여 그 意가 煤炭庫建設에 있지 않는 것 같다. 생각컨대 此地 一帶는 後日 釜山港의 通商이 旺盛한 當日, 各國人の 共同租界로서 商貿에 便利한 適地이기 때문에 露國이 占有하는 것은 安當하지 못하다.

就中 丈量劃定한 地面은 日本 石炭庫 地帶와 相距함이 멀지 않다. 따라서 伊集院領事로부터 이러한 接界는 兩國의 禍因이 될 憂慮가 있으니 露國의 煤炭庫用地는 다른 곳에 選定하기 바란다는 照會가 왔다. 뿐만 아니라 이 地面에는 國人及 日本人이 所有하는 田畠 및 山地가 있어 國有地가 적다.

따라서 「케루벨크」는 民有地의 放賣를 國人에게 說諭하고, 또한 日本人所有地와 國人所有地와의 分別을 卽速 調查하여 提示할 것을 強要하여 그의 뜻에 불만하자……갑자기 卓子 위의 紙片을 집어 손바닥으로 이를 둉글게 구겨 日本國으로 擬하고, <一切 내 말에 따르라 日本國은 微弱하다.> 하여 紙丸을 膝上에 올려 놓고 이를 불어서 땅에 떨어지자 踏

蹣했다. 舉作의 順和하지 못한 것이 이와 같다. 31日 다시 監理署에 와서 前日과 같이 同行할 것을 強要하므로 不得히 同行한 바 該地面의 民有地를 分別하도록 要求하여 即日 賣買契約을 체결할 것을 逼迫했다.

또 丈量內의 民家를 撤去하라고 한다. 여기에 있어서 外衙 發行의 公文에는 唯單 煤炭庫 用地만을 貸與하라고 되어있어 監理가 혼자 擅行할 수 없고 既히 外衙에 보낸 電報에 대한 京報가 오는 것을 기다려 다시 應接할 것을 曉諭했으나 그는 肯容하지 않고 國人과 監理를 威脅하였다. 憤惋할 者이다.....⁷⁾

이상으로써 「개루벨크」書記官이 釜山에서 취한 傍若無人한 泰도와 危弱한 國權을 배경으로 한 現地 監理의 고충, 그리고 日本側의 暗躍등 사정을 짐작할 수 있거니와 監理의 이러한 報告에 접한 外務大臣(閔種默)은 31日 다음과 같이 監理에게 訓電했다.

「俄占煤地 甚廣亦係擬定租界 且有人家田畠 豈可 送準 並詳說明 稍就空間 繪送該地形 當向俄使商定」⁸⁾

즉 現地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該地의 地圖을 보내면 露國公使와 商定하겠다는 것이다. 이 電報訓令에 따라 監理 李容植은 「개베루크」의 要求를 거절하였다. 한편으로 이에 앞선 30일 「개베루크」는 日本領事室을 訪問하고 日本人 所有의 山林과 田畠을 買收하는데 있어서 日本側이 特별한 便宜를 보아주고 또한 放賣를 勸誘해 줄 것을 要請했다.

이에 대해서 伊集院日本領事는 <私有地 賣買는 法의 自由이고, 또한 官에서 賣買를 干涉하는 일이 없이 所有者가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勸誘할 수 없다>고 하여 이 要求를 一蹴했다. 現地의 사정이 이와 같이 되자 「개베루크」는 「한도」釜山海關長을 움직여 日本領事와 東萊監理를 說服해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9月6일 「시부치」號로 仁川으로 出港해 갔다.

絕影島에 대한 露國의 暗躍을 알게된 서울 駐在의 各國 公使들은 韓國政府가 이미 各國租界로 擬定했음에도 불구하고 露國이 기여히 이를 買

7) 前掲 釜山府史原稿 P594에 의함

8) " P51에서 再引用

收하려고 하는 것은 각국의 利益을 무시하는 行爲라고 규정하고, 日英美等의 公使는 外部大臣 閔種默에게 이에 대한 경고장을 내었다. 이에 대해 閔外務大臣은 〈露國의 絶影島 租借一件은 韓國皇帝가 露國公使 草貝의 歸國(草貝는 9月에 「멕시코」駐在로 轉任하고 後任에는 「수페루」가 赴任함)에 當하여, 그의 要求를 排斥하여 不快하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억지로 承諾해준 것이다, 다시 事態의 重大함을 보고 各國租界로 擬定한 地地은 準許하지 않을것〉이라는 要旨로回答했다. 당시 政府의 稚拙한 外交策의一面을 짐작케 한다.

그리하여 9月에 「스페루」公使가 新任해 오자 朝鮮政府는 各國租界地를 제외한 다른 곳에 地面을 선정해 줄 것을 提議했는데 「스페루」公使는 政府의 이 提議를 受諾하지 않을 뿐 아니라 韓國皇帝의 不信을 詰問하고 11月15日 이후에는 釜山港에 대한 武力示威까지를 감행하게 되었다. 즉 11月15일 露國東洋船隊 소속의 軍艦 1隻이 釜山港에 入港했다가 即日로 出港한 數日 뒤에 3隻의 艦隊가 다시 入港하여 危脅的 示威를 했다.

이때 港內에는 마침 日本軍艦 鳥海號가碇泊하고 있어 양측 사이에 긴장상태가 조성되기도 했다.⁹⁾ 来航한 東洋艦隊司令長官「마가로프」는 同 20日 士官 및 水兵을 대리고 絶影島에 上陸하여 「제베루크」書記官이 이미 擬定한 바 있는 地面을 자세하게 踏查한 다음, 21日 「고래쓰」號만을 남기고 旗船「리애릭크」號와 他 1隻으로 出港해 갔다. 그 뒤 23일에 「고래쓰」號 艦長은豫定한 地面에 地境을 표시하는 標木을 세운 다음 東萊監理에게 〈人民이 標木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줄것〉을 要請해 왔다. 監理는 本件에 관한 문제로 마침 서울에 出張中이었고 監理署側은 韓國政府로부터 貸與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責任을 지고 標木을 보호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다음 해, 즉 1898年 1月21日 오전 9時경 露船「시우치」號가 다시 入港하여 오후 2時경 士官 2名과 水兵 20名이 絶影島에 上陸, 苗木 다수를 揭陸해 놓고 還船했는데 3時경에 艦長과 小佐 1名이 監理를 訪問했다

9) " P595~597 參照

가 不在로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리하여 4日에 監理가 露艦長을 面接하게 되자 艦長은 〈露國 石炭庫敷地를 絶影島에 借入하는 件은 이미 韓國 政府의 承諾을 얻었으니 그 選定地所에 대한 代價를 調査하여 提供해 달라〉고 要求해 왔다. 이에 대해서 監理는 〈本件에 대해서 監理는 外部로부터 何等의 命令에 接하지 않았으므로 要求에 응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거절한 바. 露艦長은 다시 煤炭庫敷地의 境界를 限定하기 위해서 揚陸해 놓은 松杉 등의 苗木을 심겠다고 되풀리 主張했다. 이것은 監理로서 承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人民이 苗木을 除友해도 이에 대한 責任이 있다고 맞서 承認하지 않았다.

監理와의 面談 經過가 이렇게 되자 露艦長은 다시 자기는 〈在長崎港 露國 司令官을 거쳐 서울의 露國公使에게 요청하여 韓國外部가 敷地 免許에 관한 命令을 監理에게 지급히 내려 주도록 하겠으니 監理로서도 中央에 照會해 달라〉고 提議해 와 監理도 이를 受諾했다.

監理와 露艦長의 이러한 面談을 알게된 日本領事는 이날 밤 川上書記를 監理署에 파견하여 그 内容을 探聞하고, 1月25日 本國 外務省에 이 사실 報告하는 동시에 對策을 建議하여 訓令을 請했다. 이 報告電文¹⁰⁾을 통해 서 絶影島 倉庫敷地 買入問題를 둘러싼 露日의 動向을 살펴보면 대체로 그 경과가 다음과 같다.

즉 日本領事는 前記한 바와 같이 監理가 外部에 照會한 데 대해서, 敷地貸渡를 認許한다는 反信이 올 경우 露艦은 즉시 炭庫設置를 위한 工事에着手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되면 現地 사정으로 보아 資材와 木手 등은 모두 日本人의 손을 빌리게 될것이므로 이러한 日本人을 통해서 情報을 알아隨時 적절한 對策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炭庫敷地豫定地내에 있는 日本人의 個人 所有地를 어떻게 露國인이 買入하지 못하도록 阻止하느냐가 問題였다. 炭庫豫定地내의 日本人 私有地 買入에 대해서 駐서울 露國公使는 이미 수차에 걸쳐 加藤日本公使에게 申入한 바 있

註 10) 日本外交文書 31卷 1冊 〈1月 25日發 機密第1號 電文〉

있고, 또한 日本人 所有地 有無에 관계 없이 敷地를 設定할 것을 通告한 바 있었던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이 露國이 日本人 私有地에 拘碍됨이 없이 周圈에 敷地를 設定한다면 海岸 쪽에 있는 日本人 所有地는 使用價值가 낮아질 뿐 아니라 地價가 低下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露國側이 이것을 高價로 買入하려 할 때 所有者들은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인데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日本領事館側에서 官費로서 日本人 私有地를 買上할 수 밖에 없었다. 官費로써 坪當 1圓 內外로 土地를 買入해 두는 問題에 대해서는 1897年 12月 7日附로 伊集院領事が 本國 外務省에 建議한 바 있었다.

그런 중 24日 中村許太郎이라는 土地所有者가 領事館에 出頭하여 願買者가 있는 경우 賣渡하겠다고 알리고 露國人에게 賣渡하고 싶지 않으나 부득한 일이니 官에서 상당한 價格으로 賣渡해 주기 바란다고 申請하는 事例가 나타났다. 여기에서 日本領事는 早速히 私有土地를 買入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어 구체적 사정을 具伸하여 本國政府에 買入費 支出의 件을 전의하게 되었다. 買入價格에 있어서는 그간의 土地改良費 등도 考慮하여 總計 4千圓이 필요하며, 官費支出이 不可能하면 결국 露國側이 買入하게 될 것이고 또한 露國이 土地周圈에 炭庫를 설치하는 氣味를 알게 되면 土地所有者들은 無理하게라도 露國側에 賣渡해 버리려 할 것이므로 日本人의 利益을 保護하는 의미에서도 빨리 官費로 買入해야 된다는 意見을 見伸했다¹¹⁾.

한편 監理가 外部에 照會한 電報에 대해서는 아무런 回報가 없어 露艦側도 工事에 着手하지 못하고 每日 小數의 水兵을 同島에 上陸시켜 測量만을 계속했다.

이에 日本側은 26日 土地 所有者로 하여금 地界에 「日本人 何某의 所有地」라는 標木을 세웠다. 事態의 進展이 이렇게 되자 露艦側은 이 날밤부터 露語通譯을 내세워 <土地를 지금 放賣하지 않으면 後日 官에서 買上

註 11) 前揭書, <1月27日發 機密第2號 電文>에 의함

할것이며, 땅 周圈에 露國이 炭庫를 설치하면 土地의 使用價値가 없다>는 것을 내세우고, 또는 다른 所有者는 賣渡를 능락했다는 등 勸誘했으나 日本領事館으로부터 이미 内命을 받은 土地所有者들은 쉽게 이에 응하지 못했다. 炭庫豫定地內의 土地買收 문제가 이와같이 의외로 어렵게 되자 露艦側은 27日, 揚陸한 苗木을 日本人 所有地一部에 植本해버렸다. 이에 所有者는 즉시 苗木을 뽑아버릴 것을 露艦側에 抗議했으나 거절 당함으로써 日本領事は 28日, 직접 現場에 출장하여 이事實을 確認한 다음 同日 下午 「시우치」號의 艦長을 訪問하고 이를 抗議했다. 艦長은 이에 대해서日本人 所有地인 줄 모르고 한 일이며 다른 곳으로 移植하면 苗木을 枯死시킬 염려가 있으니 가급적이면 당분간 그대로 두어 줄것을 希望했다. 이에 대해 日本領事は 植木한 土地에 대해서는 短時日이나마 所有者로부터 정식으로 借用할 것과, 또 今後 絶影島의 日本人 所有地內에는 어떠한 設備도 하지 말것을 要求한 바 露艦長은 이를 승락하고 植木으로 인해서 後日 土地에 損害가 생기면 應當한 賠償責任을 지겠다고 約束했다¹²⁾.

한편 外部는 1月30日 東萊監理에게 露國이 個人 相對로 土地를 賣買하지 못하도록 하고 새로 다른 곳을 선정시키되 民有地에 대해서는 日本炭庫의 先例에 따라 政府가 일단 買上해서 貸與할 것을 訓電했다. 露國이 炭庫 設置地로豫定하고 있는 地域內의 私有地狀況은 朝鮮人所有地가 56斗落,日本人所有地가 326斗落으로 總計 888斗落에 달하고 있었다.¹³⁾

露國의 日本人 私有地 買收에 관한 現地 領事로부터의 報告를 계속해 받은 日本 外務大臣은 1月31日 駐서을 加藤公使에 대해서 前年 9月 이후의 이 문제에 관한 經過를 至急히 보고하도록 訓電했다. 이에 대해서 加藤公使는 同日 밤 前記한 바와 같은 내용 즉 朝鮮政府 外務大臣이 東萊監理에게 發한 訓電내용을 첨부하여 <露國이 選定한 땅은 朝鮮政府가 貸與할 意

註 12) 前揭書, <1月29日發 機密第3號 電文>에 의함

13)該地量.....朝密하온즉 界限內 居民房屋 為七戶 田土 為入 180斗落中
日人所房屋 為也戶 田土 為326斗落이옵나니 是地內港要衝이오. 事係衆情
齊鬱故不改擅許하와..... <東萊監理報告 19號>

14) 前揭書 .1月31日 9時56分發 12號電文

思가 없으나 露國이 炭庫豫定地를 다른 곳에 선정한다면 貸與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는 意見을 具伸하여 報告했다¹⁴⁾

露艦側은 이미 植木을 한 日本人 所有地에 대해서 所有者(荒木)와의 사
이에 2個月間 地面을 貸貸하는 데 관한 合議를 본 다음, 植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穀物의 收獲期까지 땅을 貸與해 줄 것을 日本領事에게
要請했다.

日本領事는 土地 所有者에게 권해 보겠다고 答辯하는 한편 이 事實을
駐서을 加藤公使에게 報告하여 事後對策에 대한 指示를 請하고, 加藤公使
는 또 穀物 收獲期까지 貸與해 주어도 無妨하다는 回電을 보내왔다.

이에 日本領事는 穀物 收獲高 4石에 대한 金額 30圓을 받으면 만족하다
는 所有者의 의견에 따라 2月까지 貸與할 것을 露艦側에 通告하고 本件에
대한 艦長의 契約書 提出을 要求했으나 露艦側은 〈些小한 일에 일일히 契
約書를 差出할 수 없고, 艦長의 名譽를 가지고 日本領事에게 依賴한 것이
니 違背가 없을 것이라〉고 하여 이를 拒否했다.¹⁵⁾

이와 같이 露國 專用炭庫豫定地에 대한 露日간의 치열한 競爭이 빌어
지고 있는 중 日本 陸軍省은 同豫定地內의 日本人 私有地를 買收하기로
決定하여 買入金 4千圓을 伊集院 釜山領事에게 보내왔다.

이로써 日本領事는 日本人 私有地를 買入하고 韓露간의 現下 情勢 등을
고려하여 名儀는 그대로 두었다가 敷地問題가 일단락 난 뒤 所有者가 陸軍
省에 獻納하는 形式을 취하여 이 문제를 끝내기로 했다. 이에 앞서 炭庫
豫定地內의 日本人 私有地 買入이 不可能하다고 斷定한 「고래쓰」號는 2月
2日(1898) 仁川으로 向發했다. 絶影島 炭庫設置地 문제를 둘러싸고 露日
間에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 國際的 問題로 됨에 따라 外部는 露日 간의 暗
躍을 없애고 絶影島에 대한 어느 一國의 獨占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 各
國 共同租界를 設置할 것을 構想하게 되었다.¹⁶⁾

따라서 2月 28日 日本公使는 佛, 美, 英, 獨의 各國 公使와 會同하고 또
한 露國公使의 同意를 얻어 同島 東北端에 90萬平方米突의 各國 共同租界

註 15) 前掲, 日本外交文書, 〈2月17日字로 中村領事が 서울의 加藤公使에게 보
낸 電文 및 21日字로 本國 外務大臣에게 보낸 電文〉 참조.

를 설정해 줄 것을 外部에 申請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外務大臣은 5月 29日 東萊監理에게 <90萬方米突을丈量하여 立石作記하고 該地界內의 圖面을 첨부하여 報告하라>는 訓令을 내렸다.

이상으로써 露國炭庫地 租借를 둘러싼 露日간의 치열한 暗鬪는 일단 끝을 맺게 되었는데 外部大臣이 東萊監理에게 내린 各國共同租界 設定에 관한 訓令을 통해서 그간의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2月14日에 本部로서 絶影島擬定租界一事로 各公領事를 公同發論하야 未臻妥結하였기로 日本公使에게 照會하야 各公領事로 迅商하야 確定示明하라 하였더니 現에 該覆을 接한 즉 內開 2月14日에 貴前任 外部大臣 李道宰閣下께서 釜山港 各國租界擬定地基의 事件으로 使臣을 合同會議經過함을 叙하고 또 該問題를 附各國使臣之議하야 至確定妥辦等 因准此 閱悉하와 本使가 去 2月28일에 各國使臣을 召集當館會議더니 佛美英德 各國使臣이 會同하고도 該問題의 商議를 要請함에 各國使臣 諸般事請을 參酌하고 且 西歷 1889年以來로 各國使臣과 貴國政府間에 行한 該事件에 關한 交涉顛末을 徵據하야 熟議한 後에 絶影島 東北部로 各國租界擬定事는 李外部大臣의 申請하신 同意로決定하였으나 貴來箇에添附하신 地圖에 指定하신 地域은 其面積이 狹隘한데 目下需要를 應하여서 該港通商이 將來發達에 具備함이 不定이라고 思想하오니 貴政府에서 締盟各國에 對한 條約上에 現宜遂行하야 項者에 木浦及會寧南浦에施行之例를 傳하야 90萬平方米突土地를 絶影島 東北端에도 各國租界로選定하시기를 貴政府에 要請할 事로 決議한지라 然에 本使가 前次合議에 出席한 使臣과 其後 露國公使가 前揭決定에 表明한 意를 代하야 閣下에 申呈하야 貴政年 各國租界로 既經各公領合同 決定하였기로 該港監理에게 發訓遼辯할 意도 該公館에 作復하고 然에 訓令하니 照亮하야 帶同該港稅司하고 該島에 前往履勘하야 90萬平方米突을 丈量하야 立石作記하고 該界內田地 繪成一圖하야 具報前來함이 為可」¹⁶⁾

註 16) 前揭書,<4月2日字로 日本外務大臣이 伊集院釜山領事에게 보낸 機密7號電文 및 6月6日字로 伊集院領事が 外務大臣에게 제출한 機密11號 報告電文>참조

17) 光武2年 5月 29日 外部大臣 訓令 第13號

伏兵山과 絶影島에 대한 租借地 획득에 실패한 露國은 南海岸 要港에 대한 租借地占得의 意圖를 포기하지 않고 1898年 3月 新任公使「마추닌」의 工作에 의해서 長承浦에 租借地를 얻었다. 1900年 3月에는 日本의 妨害工作에도 불구하고 馬山浦 栗九味 일대를 租借하여 여기에 海軍病院을 비롯한 倉庫 등 軍事施設을 허다가 이를 포기, 다시 鎮海灣 占據을企圖하여 日本 海軍과 긴박한 대립을 보이기도 했다.

5

各國 共同租界를 擬定한 후의 絶影島 問題는 어떻게 되었는가. 1898年 7月26日 獨逸人이라고 자칭하는 外國인이 釜山港에 들어와 絶影島의 日本炭庫 左右地域에 있는 日本人 所有地 一部를 買收할 뜻을 海關 職員인 한 독일인을 통해所有主에게 申入한 후 「우라디보」港으로 떠났다가 8月6日에 다시 드러와, 日本炭庫 左側에 있는 1千餘坪을 6千5百圓(日貨)으로 買收할 것을 契約하고 契約金 4百圓을 所有者에게 주었다. 그리고 周邊에 있는 韓人 所有地도 買賣를 周旋해 주도록 의뢰하였다.

이 獨逸人은 「비루유코푸」라는 京城露語學校 教師로서 日本長崎港에 있는 同國商人 「킨스불크」의 依賴로 釜山에 들렸던 것이다.

土地 所有主의 申告로 독일인의 동태와 그간의 經緯를 알게 된 日本領事は 「비루유코푸」가 露國인이 아닌가 하여 그 身元을 서울의 加藤公使에게 照會하는 동시에 土地 所有者(梁田周吉)로 하여금 契約 延期 등의 方法으로써 實買契約을 履行하지 말도록 종용하였다.¹⁸⁾

그리면 차 同年 12月에 長崎의 「킨스불크」가 釜山海關 雇員인 독일인 「아 아노」에게 土地가 필요 없다는 通報를 하게 되어 日本側이 극히 경계하고 있던 本 問題는 자연히 결말이 내리고 말았다.

그러나 日本은 露國勢力이 長承浦, 馬山 方面으로 進出한 틈을 타서 露

註 18) 日本外交文書 31卷 〈伊集院領事が 8月8日字로 外務大臣에게 보고한 機密 11號 電報〉 참조.

의 競爭을 排除하기 위해서 豫定된 絶影島의 各國 共同租界地 内의 1萬平方米突을 탐내게 되었다. 1903年(光武 7) 東萊監理가 外部에 제출한 報告書를 通해서 보면 日本側은 前記 共同租界地를 租借하기 위해서 同年 2月, 美國人 陀雲仙이 豫定租界 外에 土地를 買入한 데 대해 <地契를 發給한 것 은 利益均霑의 原則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日本人에게도 이 地域의 土地 買入을 許可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光武 7年 11月 2日字로 東萊監理가 外部大臣에게 報告한 「東萊監理報告」 第39號에 그 사정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本港 絶影島에 大量인 萬平方米突을 以各國租界로 擬定한 하고 事宜는 尚未開辦이 온바 美人 陀雲仙의 擬定 租界外買收地段을 本部 電飾을 承하와 准撥官契한 後 日領事が 約章內 露利益에 同語를 憑藉하와 該國人所買影島地段을 屢請撥契에 不堪詰駐하와 不得己 略示處地를 己往撥給하였는데 光武 5年3月8日 勅令 第7號 砲台建設 區域別表를 奉遵하와 該影島砲台를 將欲設置이오면 母寧及早施行이며 如其不然이오면 日館之據約請契를 不可一向 薦撥하야 以致交際生梗이 옵기 故에 報告하오니 查照指教하와 俾便遵行케 하심을 伏望」

이상과 같은 報告에 접한 外部大臣은 11日 24日字 外部大臣訓令 第24號로써 <光武5年 3月에 勅令第7號로 定해진대로 該地에 대한 日本人 買地에 地契를 發給하지 말 것>을 命함으로써 日本의 要求는 거절되었다.

끌으로 釜山港內 要衝인 絶影島에서 日本이 土地를 占據한 經過를 보면 1885年에 海軍貯炭場 設置를 理由로 4千7百坪을 租借한 이후, 1892년에는 日人 追間房太郎이 5萬圓으로써 同島를 買收하려고 하다가 資金 不足으로 이를 포기하고, 1898년에 同島의 國有地 135萬坪을 植林 名目으로 朝鮮政府로부터 貸賦받았다. 그뒤 이중 75萬坪을 日本陸軍省이 買入했다

(常任委員)